

액화석유가스

[] 등록신청서

수출입업

[] 조건부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4일		
신청인	대표자 성명	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							
	상호			전화번호				
	소재지							
신청 내용	수출입제품명		사업개시일		최초 통관예정일			
			년 월 일		년 월 일			
	저장 시설	총규모(기수)		소재지		착공예정일		완공예정일
		kl(기)			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7조제1항·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[]등록 [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수입대행계약서 1부(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					수수료 없음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및 제출

→

접 수

→

신청내용 확인
및 통지

→

등록자격 여부
결정 및 결재

→

등록증 작성

→

등록대장 기재

→

등록증 발급

신청인

한국
석유관리원

한국
석유관리원

산업통상자원부
(가스산업과)

산업통상자원부
(가스산업과)

한국
석유관리원